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2. 2. 16.(수) 10:0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안형환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

##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0시 0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2년도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2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3차, 제4차, 제5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8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회의가 늦게 개최되어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난 2월 1일자로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안형환 부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형환 부위원장

-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 회의가 열리지 못해서 공식적인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먼저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장님과 상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위원장직을 맡아 애써주신 김 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새로운 정부 출범을 대비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하였던 제5기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를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부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부담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물결 속에서 우리 위원회가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 방송통신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며 따뜻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문 정책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정부 출범에서 비롯되는 여러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해서 국민들께 더욱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미력하나마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그리고 사무처와 적극적인 소통, 협력을 통해 최선의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신임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신임 부위원장님과 세 분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합의의 정신을 충실히 지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22-06-017)

###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장봉진 통신시장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나>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시행령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한 이후 12월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기간 중에 총 21건의 의견을 제출받았고 대부분 직접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제도정비반 종합검토를 거쳐 규개위 본 심사에 앞서 의견 반영 여부 등에 대해 인기협 등 앱 개발사에 직접 설명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1월 말 국조실 예비규제 심사결과 앱 마켓이용자 보호 및 실태조사 이외에 금지행위조항이 중요규제가 되었고, 지난 금요일 규개위 전체회의에서 심사하여 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법제처 사전심사를 추진하여 오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권익보호 의무 부과 및 실태조사 내용을 규정한 제30조의9 및 10의 신설과 특정 결제방식 강제금지 등 신설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기준을 정하는 제42조제1항 [별표 4]와 과징금 부과액을 규정한 [별표 6]의 개정입니다. 다음으로 입법예고 의견수렴 내용의 반영사항입니다. 우선 제30조의9 제4항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미성년자 관련사항을 규정한 제2호는 법률에 명시적 위임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수용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지행위 제8호 라목 관련입니다. 해당 조항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여 인앱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아웃링크나 웹 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의 사용, 권유 또는 홍보 등을 고려하여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서 사용 이외의 접근을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금지행위 제8호 중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자 규정한 바목과 관련하여 수수료, 앱 마켓 노출, 검색, 광고 이외에 마케팅 활용 등을 위해 개인정보처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앱 마켓사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자 정보 이외에도 결제, 환불정보 등 데이터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또 위법성 판단 기준 고시 중 「거래상의 지위」 판단기준인 데이터 의존성 규정을 참고해서 ‘데이터 처리’로 보다 확대해서 수정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 법제처 사전심사 의견 반영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주로 법적 약칭의 통일이나 근거 조문의 명확화 그리고 명확성·간결성 제고를 위한 자구 및 체계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삭제하고 7페이지입니다. 현재 법제처와 협의진행 중인 사항은 금지행위 제 10호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유형과 관련하여 삭제 이외에 ‘삭제에 준하는 접근 차단, 기능 제한’까지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이것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의견 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법제처 심사를 2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3월 초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3월 15일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위법성 판단기준인 고시

제정안은 저희가 시행령 공포시기에 맞춰서 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이 규제위 통과되고 나서 이른바 앱 마켓사업자들에서 나온 성명서를 혹시 보셨습니까? 그 성명서는 현재의 시행령 가지고는 구글이나 애플의 꼼수를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미흡하다는 주장인데 그것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장봉진 통신시장조사과장**

- 성명서가 아니라 관련 의견이 보도에 난 부분이 있습니다. 과정을 설명드리면 규제위 대응 과정에서는 저희가 앱 개발사들과 앱 마켓사들에게 의견을 모두 조회했고 또 수정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다만, 어제 보도와 관련한 부분들은 앱 개발사들은 인앱결제 병행 방식이나 수수료에 대한 직접 규제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임 범위도 벗어나고 현재 법 규정의 세부 시행령으로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러면 그 요구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왔습니까?

○ **장봉진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러면 방통위 사무처의 입장이 설명됐습니까?

○ **장봉진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설명됐고 저희가 규제위 심사과정에서도 같이 대응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런데도 공식적으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름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방통위에 안전이 올라오기도 전에 이것이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앱 마켓사업자와 앱 개발자의 이해관계가 전혀 다르다 보니까 주장이 아주 팽팽한 상태입니다. 지금 앱 개발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도 이번 규제위에서 직접 의견을 다 청취했습니다. 앱 마켓사업자의 의견도 청취했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포함한 앱 개발자들의 의견도 다 청취해서 양쪽의 입장이 팽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으로 만들어진 범위 내에서 앱 개발자들이 요구하는 것까지 다 담을 수 없다는 것까지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입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담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일본에서도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일본 공정위의 시장조사가 있었고 그 시장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애플과 딜(deal)이 이루어져서 일부 외부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작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올해부터 적용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애플은 그 정책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까?

○ 장봉진 통신시장조사과장

- 일본 공정위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결제방식을 직접 앱 내에서 허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외부 결제에 있는 부분을 이메일로 홍보하는 부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저희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직접적인 내부 결제, 제3자 결제를 내부에 두는 것뿐만 아니라 아웃링크 방식이나 웹 결제 안내 홍보가 가능하도록 이번 시행령에도 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리고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에픽게임즈(Epic Games)와 애플의 소송과정에서 인앱결제가 공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과 전기통신산업법의 시행령 문제는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 장봉진 통신시장조사과장

- 기본적으로 저희는 법률로 규정이 확정되어서 그것에 대해 시행령을 만들어서 금지행위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에픽게임즈와 직접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것의 결과는 추이를 지켜 봐야 하지만 서로 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행령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도 글로벌 사업자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지금 EU에서도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제재 또는 그것을 못 하게 하는 입법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것과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입법에 대해서는 제일 앞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국에서도 일부 공정거래라고 하는 형태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에서 일부 조사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부 국가에서는 진행 중입니다.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통과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애플이나 구글의 독점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애플이든 구글이든 규제하려고 해도 독점이 유지되는 한 어떻게 보면 그들의 꾀수이고 우회 전략을 다 막을 수 없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독점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이 입법으로 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들의 우회로를 차단하지 못하면 결국은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입법은 필요 없습니까?

○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 결국 인앱결제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점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의 이슈는 수수료 문제가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인앱결제 관련법만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물론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이 법이 입법되면 이후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들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지금 온라인 플랫폼법이 여러 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지든 어떻게 되든 통과가 되면 그 나머지 빈 구멍을 메울 수 있다는 것입니까?

○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 예, 저희로서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이라고 전해숙 의원이 발의하신 그 법안을 공정위와도 내용 합의를 했고 아직 국회만 통과하지 못했을 뿐 정부부처 내에서는 거의 이견이 조정된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된다면 플랫폼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점의 문제가 되고 우회로를 우리가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게 되면 그 비판의 화살이 우리에게 올 텐데 사무처가 고생스럽더라도 시장 감시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외사업자들은 다루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도 잘 가져오지도 않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해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무처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본 건은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및 앱 마켓의 실태조사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앱 마켓 이용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또 그 피해도 연동해서 늘어나는 시점에서 본 위원회가 앱 마켓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앱 마켓 사용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했고, 또 특정 결제방식 강제금지 등 신설 금지행위 유형 기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의결도 하기 전에 성명서 이후 오늘자 일부 언론에서 '구글·애플 외형만 3자 결제 인앱결제법, 꼽수 못 막는다' 이런 제목으로 보도까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대로 시행령을 공포하면 또 다시 재개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보도해서 저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사무처에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수정안 제42조제8항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의 마와 바에서 대비를 해 놓았습니다. 특히 바항에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결제방식 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앱 마켓 노출, 검색, 광고, 데이터 처리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자세하게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언론의 성급하고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정확한 내용을 홍보해서 혼란이나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우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방법이 통과되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사실 전달과 언론의 부정확한 예단 보도에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충실하게 대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앱 마켓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지난해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서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해소의 기반을 마련했고, 우리 입법사례가 국제규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12월 제3자 결제방식을 도입했고, 애플도 1월에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대면 활동 증가로 모바일 앱 마켓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 앱 개발자 및 이용자 권익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 부과, 실태조사 절차 마련,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금지 행위 등을 구체화하여 수법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지행위 예방효과를 제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원안에 동의합니다.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법의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서 실효적 집행과 공정한 앱 마켓의 생태계 조성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고시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수고하셨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여러 어려운 논란 속에서 이 같은 시행령을 마련하느라 사무처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 같은 선도적인 법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실효성을 높이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사업자들의 편법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구글이 지난해 말 한국에서 제3자 결제방식을 도입하면서 수수료를 기존 인앱결제 대비 4%p 낮췄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업계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인입 결제를 더 유도하는 편법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애플은 네덜란드에서 일부 앱에 제3자 결제를 도입하면서 구글과 유사하게 27%의 수수료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자들은 앞으로 국내에서도 애플이 이와 유사하게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까, 그래서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행위들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른 결제방식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법령 시행 이후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장봉진 통신시장조사과장**

- 사업자들과 관련해서는 관련 자료들, 산정 근거 등을 요구해서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듣는 과정이고, 법이 본격 시행되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형환 부위원장**

- 여러 편법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편법들을 방지해야만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 조성이라는 법 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콘텐츠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경제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고 추진되는 것에 맞춰서 하위법령 특히 고시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 및 이용자의 선택권 보호에 저희들의 정책목표가 있는 것이니까 그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양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율하는 절차들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가>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 배경은 미디어 이용행태가 다변화되면서 온라인 광고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반면, 방송광고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규제가 거의 없는 온라인 광고와 달리 방송광고는 복잡한 규제가 유지되고 있어 시장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열거된 방송광고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는 기술 개방 등에 따른 신유형 광고 도입 시 법 개정이 필요해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합니다. 이에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작년 1월 13일 광고편성규제 전반의 규제개혁 방안을 담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이 부분 중에서 네거티브 광고 규제체계 도입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5일 관련해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정책방향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현재 7가지 열거된 방송광고 외에는 금지하고 있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부분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청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시청자 보호를 위해 방송광고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예외적 금지사항에 대한 사후 규제체계를 강화하고 시청자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방송광고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유형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방송광고가 허용되는 만큼 시청자를 보호하면서 자율적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 기본원칙을 5가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방송광고는 제한·금지되지 않는 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책임성 있게 운영하도록 방송광고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방송광고는 방송프로그램과 혼용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합니다. 셋째, 광고주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넷째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과도한 수준의 방송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송광고의 시간 및 크기 등을 균형 있게 설정하는 균형 있는 광고 노출입니다. 다섯째는 어린이/미성년자 등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광고가 시청자를 오도하거나 불쾌하게 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방송광고 유형을 범주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7가지 방송광고 유형 중에서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중간광고를 프로그램 외 광고로 하고 프로그램 내에 있던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는 프로그램 내 광고로 범주를 2가지로 나누도록 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광고는 기타 방송광고의 범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고 범주별 규제가 필요한 사항은 프로그램 외 광고는 일총량 범위 내에서 방송광고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 시간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외 방송광고 원칙에는 광고와 프로그램 구분, 시청흐름 방해금지 원칙 등을 프로그램 외 방송광고의 원칙으로 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 프로그램 시간 총합의 일정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외 광고를 허용하되, 특정시간대에 방송광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간대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內 광고는 아래의 원칙 하에서 오락, 교양 및 스포츠중계·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프로그램 시간의 일정범위 내에서 광고를 자유롭게 허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의 경우에는 협찬주 상품 및 서비스 등이 방송 프로그램 내에 노출 시 로고 노출이 없어도 의도적으로 광고효과를 주는 경우 이를 프로그램 내 방송광고로 간주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內 방송광고 원칙에도 내용·구성 영향 금지, 광고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그리고 광고상품 등을 언급·시현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등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금지할 것, 시청자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원칙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외 양쪽 유형에 모두 속하거나 어느 하나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기타 방송광고” 유형을 신설하여 정의하고, 프로그램 내/외 광고의 유형별 원칙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예외적 금지사항 외에는 허용되는 네거티브 규제 특성상 프로그램 제목광고가 기타 방송광고의 예시가 될 수 있음에 따라 프로그램 제목광고의 허용여부 및 방송의 공공성 훼손 및 상업화 방지를 위해 프로그램 제목광고의 장르 및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시청자 보호를 위해 현행 규제 중 중간광고 규제, 광고포함사실의 고지, 프로그램 내 광고 품목 제한, 어린이 보호를 위한 규제 등은 현행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규제 면제 특례 적용 관련입니다.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중소방송사나 영세PP의 경우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규제의 준수 의무를 예외적으로 완화하여 광고시간이나 협찬고지 방법 등에 있어서 규제 면제 적용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청자 영향평가입니다.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자 영향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금지행위나 규제대상 신유형 방송광고를 신속하게 규제체계에 포섭해 시청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후규제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고규정 위반에는 과태료 처분만이 있습니다라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 따라 예외적 금지 사항에 대해 사후규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 및 위반행위에 대한 수정·중지명령 제도 도입, 유사 방송광고 관련 금지행위 추가 등 규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향 및 논의 필요 의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방송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방송광고 시장의 비대칭 규제 그리고 방송광고 시장의 위축 이런 문제 때문에 방송광고 시장도 원칙 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복잡한 사전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시청권 피해 우려도 커집니다. 시청자 영향 평가 등을 통해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징금 등 사후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거티브 규제가 되면 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은 훨씬 커집니다. 방송광고 운영에 있어 시청권 피해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광고를 통한 수익 증대, 시청률 유지 등 2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방송광고 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 토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꼼꼼히 잘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지금 프로그램 제목광고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더라도 예를 들면 지역의 중소방송사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검토사항에 한번 넣어서 살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검토 중에 있지요? 정해진 것은 없지요?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프로그램 제목광고의 경우에는 기타광고 유형 중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협찬에 들어갈 때 프로그램 내 광고와 기타광고 유형에 다 해당될 수 있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대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별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한류 영상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방송 콘텐츠 제작의 핵심 재원이 되는 방송광고 규모가 제자리걸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광고 규제 방식에 대한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방송광고 규제체계를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게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방송사업자들이 글로벌 OTT에 종속되지 않고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전환이 전체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사무처가 올해 구체적인 법령개정안을 만들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방송사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 큰 것이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인 것 같습니다. 방송 콘텐츠 성장의 동력을 찾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비대칭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형식규제를 과감하게 줄이고 원칙적인 허용과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규제 개선을 통한 자율성 확대가 방송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도외시키고 시청자를 기망하는 규제우회 통로가 되지 않도록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후규제의 수단을 효율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되면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규제면제 특례가 새로운 광고 개발 등으로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사의 제작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방송광고 분야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이유로 그 양식, 양, 내용, 거래 등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아래에서 이 같은 형식 규제는 현실에 맞지 않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번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이라는 광고제도 개선안은 방송광고의 자율성 확대와 비대칭규제 해소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시청권 침해와 방송의 공공성 훼손 및 지나친 상업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방송사, 영세PP에 대한 지원 문제는 규제면제특례 적용이라는 이름 하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데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간략히 나와 있는데 5페이지 하단에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송광고/협찬고지의 핵심 원칙은 준수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율성 허용이 용이한 영역에 대한 규제 면제 적용을 검토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까?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이것은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합니다만 광고총량제에 대한 부분, 협찬고지방법의 횡수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난 연구반에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법 개정 하면서 다시 한번 전문가나 사업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형환 부위원장**

- 그러니까 이 부분은 2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방송 또 어려움을 겪는 PP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향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실험무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방송에 대한 규제를 더 완화해 주는 것이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이고 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법안을 마련할 때 방송광고 자율성과 시청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무처 원안 보고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접수하는 의견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거티브 체계로의 전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려운 방송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완화라는 측면보다는 규제합리화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규제, 과도한 규제, 차별적 규제는 해소되어야 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꼭 필수불가결한 규제들은 신설되거나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규제합리화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 사무처에서 제시한 논의가 필요한 의제라고 제시하고 있는 5가지 항목들에 대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향후 방송 산업

발전, 그리고 시청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8. 기 타

###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새롭게 출발하시는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9. 폐 회

###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2년도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40분 폐회 】